##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419 제출연월일: 2024. 12. 12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33조의3).

법률 제 호

##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3제1항 중 "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"을 "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3조의3(휴업ㆍ폐업 및 재개업	제33조의3(휴업ㆍ폐업 및 재개업		
의 신고) ① 폐자동차재활용업	의 신고) ①		
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			
영업을 <u>휴업 · 폐업 또는 재개업</u>	<u>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</u>		
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	하거나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		
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	<u>업</u>		
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